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동의자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신청인의 취업지원 수급자격 판단을 위하여 아래(뒷면) 내용을 모두 자세히 읽고 숙지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아래와 같이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동의자 인적사항(신청인의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휴대전화 번호	동의확인 (서명 또는 인)	확인일자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서명 또는 인)	'24. .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서명 또는 인)	'24. .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서명 또는 인)	'24. .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서명 또는 인)	'24. . .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서명 또는 인)	'24. . .

*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 아래의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1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¹⁾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민감정보²⁾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³⁾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본인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⁴⁾을 통해 위 제3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안내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구원이 해당 정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취업지원 신청인은 본인의 가구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 불이익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각 항목의 동의 또는 확인 여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동의서 제출일자 : 년 월 일

취업지원 신청인 성명 : 서명()

대구지방고용노동(지)청 포항지청장 귀하

□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내용 설명

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지원 내용

-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 직업안정기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5호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기관
- 지원 내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함)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함)

2. 개인정보(DB)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 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제공하는 과세정보의 이용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정보전산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정보통신망
- 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사업자등록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농업직불금·농지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 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 정도,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출입국 정보
-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30년

5. 제3자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 제공 목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결정하기 위한 수급 요건의 확인·조사
- 제공받는 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

6.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내용 설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에 대한 아래에서 정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휴업·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유족), 취업지원대상자, 병적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출입국정보,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등
- 그 밖에 가구원 확인, 소득 및 재산 조사, 취업경험요건 확인 등에 관한 자료 중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사업에 등록된 개인정보(DB)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끝.